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7. 9.(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4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34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5-35-165~16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각 사업자별로는 (주)조선방송의 경우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할 것, (주)제이티비씨의 경우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하고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5년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 (주)채널에이의 경우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할 것을 명한다. 제안이유로는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별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자별로는 (주)조선방송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하였고, (주)제이티비씨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및 ‘14년도 재방

비율을 미이행하였으며, (주)채널에이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밖에 없고, 재승인조건에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며, '14년에 세월호 사태의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였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국 이후부터 '14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점과 '14년에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사고가 있었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EBS는 '11년도부터 '13년까지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12년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비율 미준수에 대해 '14년 시정명령을 받은 KNN의 경우 수년간 경영조건이 혹자였고 허가조건이 수치로 명시되어 있었다'라는 의견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6월 현재 재방비율 48.95%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정명령이 아닌 이행촉구를 요청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승인조건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편PP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재승인 시 종편PP 도입 목표 실현을 위해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건으로 부가한 취지, 재승인조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은 완전한 이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심인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이 전년대비 대폭 축소된 반면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BS의 경우 '10년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매년 점검하지 않았으며, '14년 재허가 시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15년 실적부터 점검할 예정이며, KNN의 경우 '10년 재허가조건에 따라 '11년에 지역방송국이 준수해야 할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정하고 '12년 실적부터 적용기로 의결하였으며, '13년 재허가 시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14년 3월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 마련 후 '14년 8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은 재승인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자의 경영조건에 따라 부과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며, EBS의 '14년 재허가조건도 종편PP의 재승인조건과 같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프로그램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편PP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종편PP 재승인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종편PP 재승인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고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 종편PP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늘 의결해 주시면 7월 중 시정명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에서 종편 중 한두 개 회사의 보도편성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의결주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없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거기에 대해 시정조치는 하지 않고 이행촉구를 하였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 6월 4일자 보고 안건에서 보도비율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도비율을 낮추라는 이행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 김재홍 상임위원

- 권고처럼 한다는 말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가 아니었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권고사항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권고사항이지만 조선방송의 보도편성이 몇 퍼센트였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51%였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51%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51%였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채널A는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44.1%….

○ 김재홍 상임위원

- 44.1% 이상이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번번이 지적당하고 학계나 전문가단체,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인데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는 편성을 지켜라' 하는 것뿐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분명하게 몇 퍼센트라든가 그것도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고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도·교양·오락 3개의 장르로만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냥 상식선에서 33%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주문에 보면 공히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이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각각 미이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선방송의 경우에는 미이행 금액이 24억원이고, JTBC의 경우에는 438억원입니다. 그리고 채널A의 경우에는 116억원 정도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조선방송은 콘텐츠 투자계획을 많이 한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자기 계획에 대비해서는 95% 정도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자신들이 정해 놓은 목표치,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들으면 '24억원, 제일 적게 미이행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제일 많이 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목표치를 따지고 검증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미니멈을 정해서 예를 들면 방송사업 매출총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하라든가 최소한 광고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하라든가 그렇게 정책당국이 정해 주고 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정한 사업계획서상만 따지면 그것은 목표치를 그냥 낮추어도 아무런 지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각각 얼마였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콘텐츠 투자 목표치가 TV조선의 경우 483억원, JTBC가 1,612억원 정도, 채널A가 621억원, MBN이 40억원 정도 됐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400 몇 십억원이면, 예를 들면 JTBC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JTBC의 1/3 정도의 목표치를 내걸고 했는데 미이행 금액만 놓고 보면 '제일 많이 이행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에 '어린이프로그램을 몇 퍼센트 이상 하라'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가 볼 수 없는 시청시간대에 새벽 4시, 새벽 5시에 해서 다 100점 맞고, 90 몇 점 맞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것을 이제야 그렇게 하지 못하게 고쳤습니다.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똑같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콘텐츠 투자 실적이라는 것은 오보·막말·편파방송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시정, 권고도 지난번 이행촉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정명령은 아닙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해서는 이행촉구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도 이행촉구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도 사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승인 심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작년 초에 지적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말·편파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지만 평균 3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역주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적게 들어가는 보도분야의 높은 편성을 줄이고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 많이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편성이 높은 보도분야에서 오보·막말·편파방송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콘텐츠 투자계획과 그 이행, 그 목표치에서부터 엄정하게 제도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어쩔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들이 콘텐츠 투자계획을 재승인 받을 때 제출하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승인 조건에 그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라고 부과한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콘텐츠 투자금액이 같은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각 방송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방송과 JTBC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매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선방송의 경우에 2014년도 매출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2014년도에 TV조선은 885억원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JTBC는….

○ 최성준 위원장

- 원래 처음에 계획을 낼 때 얼마였나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획을 낼 때는 704억원 계획을 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704억원, 그다음에 JTBC는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1,798억원 매출을 올리겠다고 제출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그 704억원 중에 콘텐츠 투자를 얼마 한다고 한 것이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704억원 중에서 콘텐츠 투자는 483억원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상에 제출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JTBC는 1,798억원 중에서 콘텐츠 투자는 얼마였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1,798억 중에서 1,612억원을 콘텐츠 투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실제로 자신의 실제 매출계획과 거기에 대한 콘텐츠 투자계획, 그다음에 매출계획과 콘텐츠 투자계획은 재승인 평가할 때 심사가 된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실제 실적을 보면 TV조선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TV조선은 목표가 계획상으로 매출액이 704억원이었는데 실제로는 885억원을 올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JTBC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JTBC의 목표는 1,798억원이었는데 1,308억원을 올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결국에는 또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콘텐츠 투자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그 비율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단순히 금액이 적다, 많다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계획상의 매출액과 거기에 대한 콘텐츠 투자액, 또 실제로 매출액과 거기에 대한 콘텐츠 투자액, 그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게 그 방송이 제대로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겠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도움이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방송사들의 콘텐츠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번 시정명령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사업자들의 판단이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재승인 조건의 표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승인조건 세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리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을 보니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판단이 실무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업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종편 3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사실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작년, 제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 힘

든 상황 안에서도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성실히 준수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준수'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승인 허가 하는 기간이 3년이 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3년 기간 중에 매년 중간에 평가를 하는 재승인조건을 뒀는데 '성실히 준수'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업자와 방통위 간에 합의된 의견을 이제는 좀 더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반드시 지켜라'든지 '성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상당히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 그러니 이해해 달라'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하면 족한 것이지, 당장 시정명령을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나름대로 보니까 사업자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승인하는 조건을 달 때 막연히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 수치를 그대로 수용해 놓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것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규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 승인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JTBC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2013년도에 매출이 890억원이었습니다. 890억원이었는데 2014년도 재승인을 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1,612억원을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매출의 2배를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 물론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종편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출 대비 콘텐츠 투자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거의 자본잠식을 다해 갈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 좀 더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과연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투자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매출 대비 콘텐츠 투자가 매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수치를 보면 어떤 한 사업자가 자기 총 매출 대비 콘텐츠 투자라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것을 넘어가고 오버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자칫하면 보여 주기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허가, 재승인을 할 때도 이런 목표수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수치가 좀 더 합리적인 수치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부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에 일부 같은 생각을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JTBC의 경우에 콘텐츠 투자액과 관련해서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너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나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의 경우 '충분히 이행가능하다'고 했고, 특히 지금 계획을 달성 못하고 있는데 매출액 자체도 굉장히 높게 잡았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높은 매출액 하에서는 그런 콘텐츠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견지했던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실히 이행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해석을 서로 약간 다르게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이행하라'면 거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성실히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성실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 촉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안건으로 접수를 해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지금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단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보고안건을 접수한 다음에 각 방송사에 의견을 조회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을 조희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꽤 많은 양의 설명이 저희에게 제출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러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원래 이런 계획으로 하려던 것이 취소가 됐다'라든지 또는 '연기가 됐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것은 나름대로 이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어서 성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본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랬는데 저도 같이 의견서를 봤습니다만,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다시 그런 구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또 많은 적자를 내면서도 하여간 나름대로 콘텐츠 투자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비율이 높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방송의 경우에는 제가 쪽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이행실적이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 대비 비율이라든지 이런거에서 뒤지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을 뿐이고,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는 '투자조합에 얼마를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콘텐츠 투자액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콘텐츠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감안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투자조합 형태로 해서 실제로 방송사는 일부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방영이 된다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콘텐츠 투자액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방송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외주나 직접제작이나 구매했던 부분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프로그램이 설사 방송이 되더라도 그것은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액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이군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쪽 살펴본 것처럼 종전에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일단 비율이 미달되지만 그 비율 미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가 검토한 것이 맞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성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쪽 검토해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PP들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그것대로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행정행위는 법에 기반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시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직접투자, 간접투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펀드 등을 통해 제작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는 계획과 '콘텐츠에 대해서 직접 얼마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사업계획서상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업계획서상에서 집계해 주는 부분은 조선방송이 주체가 되어서 구매를 한다든가 외주를

한다든가 자체제작을 한다든가 이 부분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체, 펀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잡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는 펀드를 통한 투자계획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방송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일 텐데,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종편들이 투자계획 미이행, 그다음에 재방비율 미준수로 해서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받은 것이 첫 번째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닙니다. '12년 실적 부분에 대해서 '13년 8월 23일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최초 승인기간 3년 동안 대부분의 종편PP들이 최초 제출했던 투자계획을 미이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 미이행에 대한 점검과 제재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입장과 종편사들 간의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것이 성실한 이행에 대해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편들은 성실한 이행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고, 저희는 '완전한 이행'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적으로 보면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있는 재승인조건 이행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지금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들의 재승인조건 첫 번째를 읽어주시겠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조건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3개 종편사들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겠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직은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완전한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재승인조건을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 저희가 완전한 이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2년도 재허가조건 불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에 대해서 종편 4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판부의 판단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대로 완전하게 이행을 해야 하고, 재방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는 시점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종편 4사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은 승인조건이 아니라 권고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통위가 종편사업자 도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볼 때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승인조건은 단순한 권고적 의미가 아니라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의 승인조건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제가 달리 해석한 것은 없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성실히 이행하라는 의미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내린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종편사업자들 일부가 '100% 완전한 이행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나, 지금 현재 계획도 최초 사업계획 대비, 투자계획에 대비해 보면 1/3이 축소가 됐고, 많은 경우 절반 가까이 투자계획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 축소된 투자계획마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로서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적 사업자로서 정부와의 약속, 그 다음에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책무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준비된 의결주문 안건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다만, 좀 더 분석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투자목표액이 적은데도 다 달성하지 못했으면 그것은 다 이행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JTBC 콘텐츠 투자계획액이 너무 높는데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이행실적을 보면 비율은 낮지만 절대액수는 또 높습니다. 다른 종편보다 훨씬,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다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심인들의 주요 의견들이 다 작년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영이 어려웠다고 하지요. 그런데 매출액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다 초과달성했네요. 다가 아니라 TV조선과 채널A는 초과달성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자신들의 매출액 목표치에 25% 이상이나 초과달성했습니다. 180억원 안팎의 초과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 투자액을 매출액 대비로 규정해 놓았으면 초과달성한 만큼 25% 이상 콘텐츠 투자비율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지 가령 50억원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 200억원 정도 미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놓은 사업계획서 말고 방송사업 총 매출액이든지 광고 총 수주액에 대비해서 콘텐츠 투자 목표치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해야 보도 편성비율을 낮추라 하는 권고인지 조건부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오락·교양 쪽에 투자를 해야 보도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도 분야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덜 들어가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서 대안을 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엄정하게 하게 계속 권고하고 점검을 해서 콘텐츠 투자를 높여 주어야 교양과 오락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보도비율이 낮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보·막말·편파방송이 주로 나오는 보도 편성비율을 낮추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종편으로 갈 수 있게 정책을 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더 검토하고 앞으로 정책을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6월 4일 종편의 2014년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에서는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점검했던 것이 종편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 이행여부였습니다. 그렇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당시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종편들의 오보·막말·편파방송이 감소하기는커녕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에 관련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이행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이행촉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이행계획 접수를 6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행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V조선의 경우에는 심의제재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3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저격수>, <뉴스1>, <황금펀치> 3개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건수가 57% 정도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TV조선에서는 심의제재를 많이 받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자체심의규정이나 출연자심의협의체 이런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에도 보도국 내에 사실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성보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팩트 체크, 그다음에 보도원, 취재원 부분을 3단계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도 사실검증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원래 1명이 CP가 이 부분을 검증하던 부분을 2인 이상 교차 복수 검증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출연자 사전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전인터뷰를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방송책임자 내부 징계기준 강화 부분들도 개정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PP들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 이행실적 점검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실시를 했고, 지금 또 금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하신 대로 종편들에 대해서는 사실검증시스템의 강화, 진행자·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교육 내실화, 오보·막말·편파방송 책임자에 대한 방송사 내부 징계 강화 및 제재기준 명확화 등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막말·편파방송이 집중된 프로그램 몇 개 폐지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종편방송을 보는데, 여전히 특정 종편의 경우에는 막말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선정 문제나 패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강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개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TV조선의 경우에는 출연자 심의협의체 운영규정 같은 것을 제정해서 출연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출연금지를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JTBC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시사·보도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해서 공정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4단계 검증을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채널A 같은 경우에도 시사토크 프로그램 대상자는 사전 인터뷰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현재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의견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종편방송사들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재승인 심사나 또 그 전에 방송평가 등을 통해 철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저희가 담당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지향을 떠나서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합리성을 갖춘 시청자라면 일부 종편과 보도PP의 현재와 같은 방송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기가 되어야 할 종편이 사회적 흥기로 변해 가고 있다', 심지어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종편PP나 보도PP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지만 금년부터는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 그다음에 이행을 촉구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저희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지적대로 준비해 주시는데, 다만 한두 가지는 조금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편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먼저는 '종편들이 전혀 그것에 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승인할 때 이런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들을 나름대로는 종편들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2014년도에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강력한 이행촉구를 하게 된 것은 소위 제출된 계획대로는 다 이행을 한 것인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방심위에서는 오히려 더 종전보다 오보·막말·편파방송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계획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이행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행촉구를 한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 부분에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이런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업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방송통신위원회로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행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면 그것이 결과로 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해서 심의를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과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계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상반기에 또 집계를 할 것이니까 과연 그런 프로그램들이 폐지됨으로써 오보·막말·편파방송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판단을 바꾸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보면 저희가 주문했던,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진행자·출연자에 대해서 사전모니터링, 교육 내실화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일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과 그 패널들은 오보·막말 그리고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도 심의 요청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개선방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그것을 성실히 이행했다, 그것이 나중에 객관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말씀드린 것에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편성 TV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왔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보고를 받고 강력하게 이행추구를 한 이 유도 나름대로는 이행을 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심의건수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행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고 위원님과 제가 의견이 같은데, 다만 '전혀 노력을 안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도하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1시간째 참석하는데 오늘 회의에 참석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고 위원님은 3번 의견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꾸..., 김재홍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저에게 한 번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준비한 조치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왜 이렇게 피심인과 위원님들 간에 성실한 이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니까 방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허가, 재승인이 3년, 5년 단위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허가권자인 방통위도 그렇고 대상자인 방송사업자들도 그렇고 재허가조건, 재승인조건 베이직에 대해 조금, 개념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업 허가라면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 허가라면 허가는 한 번 해 주면서 허가조건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조건 이행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전제로 허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바로 승인 취소가 들어가기 전에 시정명령이다, 거기에 만약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일중

의 듀프로세스(due process)로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법에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뿐이지, 그 정신 자체는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용어에 따라서 ‘성실히’ 이 말이 붙으니까 자칫 이렇게 보면 그것이 꼭 이행을 안 해도 되는 듯한 그런 어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종편뿐만이 아니고 모든 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 재허가나 재승인할 때 그 조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하고 명확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 ‘이행할 것’ 앞에 붙는 어떤 수식어를 앞으로, 저는 종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후단에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금년 말까지 이행할 것’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2015년 말까지 투자를 하라’, ‘이행을 하라’ 이런 시정명령인데 2015년 것을 굳이 넣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꼭 그 말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명령대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이것으로 끝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만약에 종편 3개사 중에 어느 누가 2015년도 콘텐츠 투자금액을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을 못 하겠으니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물론 사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2014년도 것이 2015년도로 이렇게 넘어와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보나..., 그러면 금년에 소화해야 할 투자금액을 또 이월시키는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편사업자들이 그런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앞으로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잘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겠

지만. 여하간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시정명령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히 준수한다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확한 의미를 한 번 더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성실한 준수의 의미와 지금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성실한 준수의 의미는 분명히 제가 볼 때도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성실히 준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각각의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건을 달 때는 사업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야지,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누구든지 각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의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고삼석 위원님께서 평소답지 않게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방통위가 언론사, 방송사의 편성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종편을 마치 '사회적 흥기'라고 하는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과연 우리 행정부 차관의 입에서 언론사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내용에 관해서는 방통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분명히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의 한 위원회로서 언론에 대해서 공정성 부분에 관해서 특히 우리가 발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나 또는 정치권에서나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행정부에서 언론에 대해서 내용의 공정성 부분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듣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 위원님께서 아주 종편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느낌을 표시하시기에 저로서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좀...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먼저 하시겠어요?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논의의 방향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에 관한 시정명령을 논의하는 것인데 마치 지금 이 자리가 종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안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논의해서는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 안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됐고….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입장은 해명해야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이 최근에 아주 강해지셔서….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발언을 하실 것까지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흥기’라고 이렇게 단언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부 종편의 보도내용과 행태와 관련해서 밖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적 공 기여야 할 방송이 사회적 흥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사회적 흥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방송내용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또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성실히’가 무슨 의미냐? 글썄요. 법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라면 100% 이행하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적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부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의 100%를 다 이행하라’ 하는 것이 성실한 이행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상의 매출규모를

훨씬 초과해서 실적을 달성한 방송사는 종편 2개사 외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정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개 종편이 자신들이 정해 놓은 매출액보다 25% 이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콘텐츠투자액도 올려서 이행하는 것이 성실한 이행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만 100%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업의 총 수주액이나 총 매출액이나 광고매출액에 대비한 콘텐츠 투자비율, 콘텐츠 투자액 이것을 우리가 놓고 평가를 해야 한다,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성실한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삼석 위원 본인께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현재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방심위의 심의조치, 제재와 행정지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냐, 흥기냐? 이것은 고삼석 위원 본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밖에 시민단체나 전문가 그룹에서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고 소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캐비닛 멤버는 아닙니다. 여기는 정부기구지만 독립된 정책기구로서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 교류해야 하고, 전문그룹의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직 공직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깥의 여론층이, 전문가층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인용할 때는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방송 언론을 표방하면서 보도분야를 그렇게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언론이라면 정말 사회적 공기인데 그것이 흥기로 변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많은 지식인들이 하고 있다, 그것을 여기 와서 인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상임위원의 의무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용한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재승인조건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의 의미는 제시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입니다. 즉, 완전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고, 다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이것을 달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비록 수치상으로 100%가 아니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고려해 줄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편 3사의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의견들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종편 3사 중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집행된 부분을 미집행된 부분에 관해서 내년에 반드시 집행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 최성준 위원장

-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 허원재 부위원장

- 올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과가 되면, 지금 JTBC 같은 경우에는 438억원이 미달되어 있고, 채널A가 116억원이 미달되어 있고, TV조선은 24억원입니다만, 이 2개사가 과연 이것을 이행을 하느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특히 JT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올해 이행될 부분에 합쳐지게 됩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각 종편사가 판단해서 그것이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올해...,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계획만 이행하는 것도 참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작년의 미이행분이 더 합쳐졌을 때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정도는 더 이행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더 이행하기 힘들다'라든지, 합리적인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준비해서 콘텐츠 투자계획에 대한 중요사항 변경이나 주요내용의 변경을 신청해 오면 그때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의 길을 완전히 막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2014년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2015년에 합쳐서 꼭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사정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유연성 있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은 표현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5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저희 회의의 내용이 종편사에 전달이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콘텐츠 투자금액이 2014년도 것이 2015년에 합쳐져서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2015년에 콘텐츠 투자계획을 줄이겠다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이행해야 할 부분이 이만큼인데 사정이 이만저만하고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고,

무조건 더해졌으니까 더해진 것만큼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정명령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20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할 것' 여기에 후단을 쓸 필요가 있는지를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 금액을 다 합쳐서 20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아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위원장님도 이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인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2015-35-165 ~ 16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이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기존 재허가 조건 이행 등의 이유로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611.96점을 받았으나 대표자가 재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수행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과 시청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허가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아래 조건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재허가에 동의한다. 첫째,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주)온유랜드에 대한 대여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재허가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재허가 기간에 최다액출자자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이사회 기능 활성화 등을 포함한 경영 투명성 확보 계획을 재허가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재허가 기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각서를 재허가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래창

조과학부는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기존 재허가 조건인 교육훈련계획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씨제이헬로비전 계열 3개사, (주)티브로드 계열 4개사, (주)씨엠비 계열 3개사, 한국케이블티비 푸른방송(주), 금강방송(주) 등 12개사 재허가에 대해 동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자는 '15년 7월 13일부터 10월 19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3개사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심사위 구성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심사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과 방송·법률·회계·시청자 분야 등 외부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신청서, 미래부 심사의견서 등의 자료 검토와 사업자 의견청취를 거쳐 방송평가, 운용실적 및 사업계획의 세부항목을 심사한 결과,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611.96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위 건의내용입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611.96점을 받았으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표자 및 최대액출자, 2대 주주의 부관사항 미이행에 대한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향후 성실한 이행 및 문제점 개선 의지, 시청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재허가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다음에 조건부가가 필요합니다. 재허가 사전동의 조건(안)은 박스 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약식심사입니다. 약식심사위 구성 및 의견입니다. 방송·법률·회계분야 등 외부전문가 3인으로 약식심사위를 구성하여 미래부의 심사의견서, 사업자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MSO 계열 10개사 재허가에 대해 미래부가 부과한 아래의 공통 조건과 (주)씨엠비 계열 3개 SO에 대한 추가 조건인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투자·이행계획 재수립·제출' 부관사항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개별 SO인 금강방송(주)에 대한 위 박스 안에 있는 공통조건 1, 2번과 한국케이블티비 푸른방송(주)에 대한 박스 안에 있는 공통조건 1, 2번에 추가조건인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행계획 제출' 부관사항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 수행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건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심사위의 심사결과 및 약식심사위의 의견제시 내용, 미래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하고,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12개사의 재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결주문과 동일합니다. 향후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에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심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고삼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본심사 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 발언 횟수까지 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발언은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은 2012년 재허가 심사 시 624점으로 한

차례 재허가 불허점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
 다. 금년도 미래부 재허가 심사에서 614점으로 역시 재허가 불허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 심사에서도 611.96점으로 재허가 불허 점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허가사업자, 그리고 상장된 방송사업에도 방송사 경영을 친인척들이 개인기업 수준
 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2012년도 재허가 심
 사 시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그 조건을 미이행 했습니다. 그리고 PP들
 에 대한 사용료를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방송과 무관한 주요주주들이 설립한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대여금을 제공함으로써 SO의 경영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청자위
 원회의 형식적 운영,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는 다시 '조건부 재허가'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미래부는 조건부 재허가 조건을 이행
 하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제재도 없이 동일한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의 주문에 다섯 번째, 지난 재허가 기간 동안 재허가 조건인 교육훈련계획의 미이행, 이
 것에 대해서는 미래부로 하여금 점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재허가 심사제도의 취지와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 차
 원에서 저는 '불허'가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재허가 심사를 담당한 미래부에서 '조건
 부 재허가'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또 재허가 사전 동의 심사위원장으로 다수의 심사위
 원들이 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주자는 입장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소신은
 있으나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1차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재허가나 재승인 제도를 이대로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조건부 재허가 조건을 미이행 했음에도 불구하
 고 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한 것은 재허가 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
 행대로 재허가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이 의결이 되면 어떤 결론이 나든 미래부와 공동으로 재허가 불허 이후 절차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날로그 독점지역에서는 이용자 보호방안이
 지금 마땅치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2회 연속 재허가 불허 점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개
 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부 재허가 조건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면 '(주)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허가 조건 위반 시 방송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재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자 보
 호대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재허가'를 2회나 해주어야 하는 상
 황에서 보면 이러한 조건들은, 즉 6개월 업무정지라든가 유효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히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것인지, 즉 실질
 적으로 6개월의 업무정지가 가능한 것인지, 유효기간의 단축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 직후에 바로 미래부와 협의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은 또 없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 사업자가 재발방지 약속, 문제점들을 잘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저희들이 대표자, 최다액출자자, 2대 주주까지 불러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번 재허가 심사 때도 이런 지적을 받았고 조건 부가가 있었고 그것을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난번에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650점 이상이어야 통과되는데 611.96점이면 이것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630점만 맞았어도 '조건부 허가', 주관부서는 미래부니까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인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부동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SO, 그 지역의 시청자들을 일종의 볼모로 해서 '방송중단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이 재허가, 재승인이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불허, 탈락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시청자들만 피해를 보니까 안 된다? 방송시설·장비의 양도·양수에 관한 절차법, 이것은 제가 국회 의원을 할 때 2004년도부터 주장을 했고 그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 안팎에서 동의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방송시설·장비의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어디에서 정부내 어떤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0년 지난 것이라니까요. 그때는 방송위원회 시절이지만 지금은 방통위고...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계속 연구하고 있고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말하자면 시청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임시허가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모델케이스로 이런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임시허가를 내주고 1년, 2년 사이에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을 이행해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 그런 임시허가제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여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속도 있게 임시허가제를 검토해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시설·장비의 양도·양수절차를 방송법에 빨리 입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전동의하는 부처이지만, 이 방송사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방송사업에 전념한다고 할까, 사회적 공적책무를 가진 시청자를 보호해 가면서 그 의무를 다해 가는 방송사업자인가, 아니면 다른 자신들의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한 데코레이션으로 이용하는 것인가가 불투명하고 진짜 의심이 갑니다.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아직 무책임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시청자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이 미비한 것이지요. 그러니 부동의하고, 비상체제를 가동해서라도 빨리 법안을 만들어서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선 방송시설 양도·양수, 그다음에 임시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에도 들어있는 부분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속도감 있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의결주문은 조건부로 재허가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재홍 위원님께서서는 부동의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만약 저희가 부동의를 하면 미래부는 저희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김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평소 존경하는 고삼석 위원님이 직접 심사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셨고 그 심사내용도 아주 적절한 것 같아서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고삼석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불허라고 했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개인적으로는 불허 입장이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장으로서 제가 이 심사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다시 또 한 번 '조건부 재허가'를 주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한 심사위원장으로서 저의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사위원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최대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요? 최대한 존중해 왔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고삼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견,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강력한 재허가 조건, 그리고 또 고삼석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 의견을 나름대로 존중해서 결정하신 부분 등을 고려하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 하에 재허가에 동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께서?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말씀드린 방송시설·장비의 양도·양수절차를 방송법에 마련하는 것을 시급히 하고, 임시허가제 역시 시급히 도입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중의에 따르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불허해서 정말 그 지역 시청자들이 방송중단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정책당국으로서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법제의 허점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만, 재허가 조건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고칠 수는 없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1호는 회수계획이니까 계획일 수밖에 없어서 자기가 주체가 아니지요. 저쪽에서 대여금을 갚아 주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계획 제출로 마무리를 짓지만, 3호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재허가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

어 계획만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재허가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문구는 조금 다듬어야 하는데, 재허가일까지 이행하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문구를 조금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재허가일까지 제출하고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계획은 사외이사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고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견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호, 3호, 4호를 다 수정하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1호에서 회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 의무가 이행이 안 됐을 때 문제인데, 어쨌든 1호의 경우에는 온유랜드가 제3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4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PP 사용료 지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그다음에 이행각서까지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립·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각서를 재허가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이행각서대로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으면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해서 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1호도 제출하고 '그때까지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써야 합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1호와 3호에 대해서는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에서 이행각서를 인감증명과 같이 다 제출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행각서를 이행 안 했을 때 우리가 재허가 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그 애매함을 명확하게 해 놓자는 것입니다.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안 하면 그것은 재허가 조건 위반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자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인 것입

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5가지 사안의 문구에 대해서 미래부와 실무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다 협의를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없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3호와 4호는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1호는 지금 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경영혁신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여금 회수나 PP 수신료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 같은 경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쪽에서 경영혁신계획을 제출한 바에 따르면 지금 7월까지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7월까지 해서 현재 100억원 정도 온유랜드에 대여가 되어 있는데 7월까지 절반을 바로 회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1년 이내에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경영혁신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재허가 조건 같은 경우는 '조기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재허가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회수계획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거나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1년 이내'라고 할 것 없이 회수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획대로...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7월까지 얼마, 내년엔 얼마이니까 그 계획대로... 그런데 제가 3호, 4호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1호는 나중에 재허가 조건 위반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회수하려고 했는데 온유랜드가 안 갚아줘서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 책임 문제가, 재허가 조건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각서도 지금 받아놓았다면서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만일에 계획대로 안 되면...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어차피 온유랜드 핑계를 대면, 1호는 재허가 조건 위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3호, 4호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저도 1호도 부과할 수 있다면 부과해도 관계없습니다만...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현재 온유랜드 지분을 매각한 상태인데 그 온유랜드는 원래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주요주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온유랜드에 대해서 대역한 100억원 중에는...,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실질적인 오너가 가지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온유랜드에서 보증금으로 44억원을 또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복잡한 거래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온유랜드 쪽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유랜드를 경유해서 다시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실질적인 오너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44억원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순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쪽이 책임지고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절반 정도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절반 정도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리고 계획대로 다 이행을 한다고 해도...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하지요. 1호, 3호, 4호 다 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1, 3, 4호에 다

붙이는 것으로 하십시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좋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거기에 '성실히'를 넣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으로는 그것도 넣는 것이...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성실히'를 넣나 안 넣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엇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그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책임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하는 부분일 테니까 그것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 3, 4호에 '그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4호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표현을 '그 이행각서대로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PP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재허가 조건을 붙여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그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혹시 오늘 회의 몇 시까지 하시고자 하는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나머지 3건은 특별한 토의사항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35-169~17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다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21개의 판매점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은 금년 2월부터 국민신문고와 KAIT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텔레마케팅을 통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해서 그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위법행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50개 판매점이었고, 다만 25개 판매점은 주소지 파악이 어려워서 실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인 광고입니다. 7개 판매점에서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설명 또는 표시·광고하여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도록 영업을 하였고, 두 번째는 4개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에 추가로 100분의 15의 범위를 더한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판매점별로는 5건 내지 55건이었고, 최대 25만원까지 초과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16개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서 영업을 해야 하나 사전승낙서를 미게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영업을 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위반사항별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21개의 업체입니다만 이 중에서 6개 업체는 위반행위가 2건 중복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먼저 오인 광고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지원금 과다지급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였으며, 그다음에 사전승낙제 위반은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21개 유통점 전부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태료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별표 3]에 따라, 오인 광고를 한 7개 판매점에 대해서는 1회의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4개의 판매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를 가중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15개 판매점에 대해

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다만 1개의 판매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에 따라서 50%를 감경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에 피심인들의 제출의견과 판매점별 위반사항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라.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 (2015-35-17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아래와 같이 경감하고자 합니다. 경감 대상 연도는 2015년도로 하며, 편성의무비율 목표는 자막방송 46.4%, 화면해설방송 5.3%, 수화통역방송 4.4%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시간을 가급적 장애인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12시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2에 따라 OBS경인TV(주)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6월 5일 OBS경인TV(주)가 신청하고 6월 22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OBS경인TV(주)는 최근 5년간 연속 적자상태이고, 자본잠식률이 96.5%로 고시 제7조의2 [별표 2]에 따른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 '15년도 OBS경인TV(주)가 장애인방송 제작비 정부지원 2억 8,500만원, OBS경인TV(주) 자체조달 1억 5,000만원 총 4억 3,500만원으로 제작 가능한 비율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비율로 편성의무를 경감할 것을 심의·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시각장애인단체나 청각장애인단체 및 OBS경인TV(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의무 경감 수준을 의결하였는데, OBS경인TV(주)가 경영이 어렵지만 일정 수준의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분담하여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도록 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문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 한 차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마. 2014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 (2015-35-17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마> '2014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미달성 사업자인 전주MBC, OBS경인TV(주), (주)씨엔티브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방통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4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사업자 중에서 이행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14년도 실적을 공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을 제출받아 산정·평가하였고, 6월 10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 위원회의 실적 평가를 거쳐 심의·의결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방송 제공의무의 주요내용은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의 TV시청을 돕기 위해서 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방송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은 '12년 7월부터, 유료방송은 '13년 1월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는 자막·수화·화면 등 유형별로 중앙지상파는 '13년까지, 지역지상파는 '15년도까지, 유료방송은 '16년도까지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실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전체 156개 의무사업자 중 153개 사업자가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98.1%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3년도 달성률 62.1% 대비 36%가 향상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필수지정사업자 57개 사업자 중 55개사가 달성했고, 96.5%가 되겠습니다. 고시 의무사업자는 99개 사업자 중 98개사가 달성해서 99% 편성목표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성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전주문화방송(주), OBS경인TV(주), (주)씨엔티브이 등이며, 이 3개 사업자는 화면해설·수화통역방송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폐쇄자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조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방송 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 '16년도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간 이행과정에 있고, 전주MBC는 자발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OBS경인TV(주)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주)씨엔티브이는 '14년도까지는 의무사업자였지만 '15년부터는 의무사업자가 지정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차후 의무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임을 통보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14년도 장애인방송 이행평가 결과를 보도자료 및 방통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신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외 출장 관련해서 지난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방문진 이사장께서 2년의 임기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포함된 해외출장에 쓴 경비가 모두 6억 5,000만원 정도이고, 역대 이사장들의 해외출장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과도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방문진 재원은 MBC의 배당금 및 출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제2항에 MBC는 해당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에 해당하는 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최근 5년 동안 MBC에서 방문진에 출연한 출연금 규모가 303억원입니다. 또한 방문진이 이를 포함해서 운영한 자금은 총 471억원 정도 됩니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

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예산결산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문진의 이사와 감사를 임명하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방문진의 회계감사에 대한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방문진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습디만,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면 감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방문진에 대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규정을 준용해서 방문진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통위는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관계서류, 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방문진법에 넣는 것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과 달리 방문진에 대해서 그런 회계검사 같은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지 않은 것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16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0분 폐회 】